

2018년도  
행정사무감사계획서(안)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감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,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
- 도정주요사업 추진 상황의 감사, 조사, 현지 확인을 통한 행정수행 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,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, 감사장소

감사일자	대상기관	감사장소
11. 12.(월)	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	현지확인
11. 13.(화)	균형건설국, 교통연수원, 충북개발공사	건설환경소방회의실
11. 14.(수)	재난안전실, 환경산림국, 재난안전연구센터, 친환경구매지원센터	건설환경소방회의실
11. 15.(목)	소방본부, 바이오산업국, 오송바이오진흥재단	건설환경소방회의실
11.19.(월)~21(수)	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	

※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

## 3. 감사반 편성

감사반장	감사위원	감사보조
이수완	윤남진, 연종석, 김기창, 오영탁, 박병진	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박대우 행정6급 이재순 행정7급 정승환 행정7급 조정숙 속기사 2명

## 4. 주요 감사사항

- 2017년 이후 감사원, 중앙부처,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-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-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사항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
-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
- 현안사업으로서 추진 상 문제점이 예상·발생된 사업
- 각종 지원 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 및 추진대책
- 지역주민의견 (현장 확인 시)
-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
- 대 집행부 질문·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
-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
- 민원처리사항 등

## 5. 관계인 출석요구

### 가.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

-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·증언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요구
- 대상은
  - 재난안전실 : 실장, 각 과장
  - 균형건설국 : 국장, 각 과장, 사업소장
  - 바이오산업국 : 국장, 각 과장
  - 환경산림국 : 국장, 각 과장, 사업소장
  - 소방본부 : 본부장, 각 과장, 각 소방서장
  - 충북개발공사 : 사장, 본부장, 각 실장
  - 충청북도교통연수원 : 원장, 사무국장, 총무과장

- 오송바이오진흥재단 : 사무국장, 부장
- 재난안전연구센터, 친환경구매지원센터 : 센터장
-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 
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
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

## 6. 감사요령

### 가. 감사방법

- 업무보고 청취, 질의·답변
- 자료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
- 증인출석 요구를 통하여 출석하는 증인으로부터의 증언청취
-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하여 출석하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청취
-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및  
증거수집

### 나. 감사진행 순서

- ① 감사실시 선언, ② 위원장 인사, ③ 증인선서(기관장 등)
- ④ 보고 (불 필요시 생략), ⑤ 질의 및 답변
- ⑥ 감사결과 강평, ⑦ 감사 종료선언

### 다. 감사보고서 작성

#### (1) 방 침

- 감사보고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작성
-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주요감사내용 등  
감사경위와 시정개선 요구사항, 촉구 및 건의사항 등 감사  
결과와 기타 특기 사항을 포함

## (2) 작성 요령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
- 감사종료 직후에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 (감사반장)에게 제출
- 감사위원 의견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(안)을 작성·의결 하여 의장에게 보고

## 7. 기타 필요사항

- 보고, 서류제출, 현지 확인,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, 진술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다만,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위원 요구사항과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여 처리
- 인사발령이나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신임 보직자가 증인 신분으로 간주처리
- 감사장 사전점검 및 현지확인 시 차량지원 등